

"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구현,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"



# 대한체육회



수신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학생선수 전국대회 참가신청용 '학교장 확인서' 시행 안내

1.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-427(2017.1.20.)호 관련입니다.
2. 위 호와 관련하여 학교장 확인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최종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3. 이에, 2017학년도부터 학생선수가 전국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 확인서를 참가신청서와 함께 해당 경기단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접수처리가 가능하며, 이와 관련된 시행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단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적용시기: 2017.3.1. ~

나. 적용대상: 학생선수(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한 자)

\* "학생선수"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.

다. 확인사항: 학생선수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횟수 준서 및 최저학력 적용 여부

1) 참가횟수 적용기간: 2017.3.1. ~ 2018.2.28.(1년간)

2) 최저학력 적용기준: 1학기(전년도 2학기말 성적), 2학기(당해년도 1학기말 성적)

\* 초등학교: 지필고사 미 실시 학교에서는 자체기준 수립 후 적용

라. 제출방법: 학교장 자필 서명 후 참가신청서와 함께 해당 경기단체에 제출

마. 행정사항: 학교장 확인서 미제출 학교는 참가신청 미승인 처리

붙임 학교장 확인서(전국대회 신청용) 1부. 끝.

학교체육부장

수신 시도체육회장, 회원종목단체장(정회원), 회원종목단체장(준회원), 회원종목단체장(인정단체), 회원종목단체장(결격단체)

★대리 임한정      부장 직무대리 전결 02/01 류미경

협조자

시행 학교체육부-333      ( 2017.02.02. ) 접수      대한태권도협회-178      ( 2017.02.16. )

우 05540    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(방이동, 대한체육회) / www.sports.or.kr

전화 02-2144-8236      /전송 02-2144-8193      / havana007@sports.or.kr      / 공개

## 학교장 확인서

학교명			종목명	태권도
			참가제한 횟수(1년)	3회
참가 신청 담당자	성 명		종별	남(여)초, 남(여)중, 남(여)고
	연락처		(지역번호)000-0000	적용년도 (기간)

### 전국대회 참가횟수 및 최저학력제 적용 현황

순	이름(학년)	①참가횟수	②최저학력제 (○,×)	순	이름(학년)	①참가횟수	②최저학력제 (○,×)
1	홍길동(3)	1/4	○	11		/	
2		/		12		/	
3		/		13		/	
4		/		14		/	
5		/		15		/	
6		/		16		/	
7		/		17		/	
8		/		18		/	
9		/		19		/	
10		/		20		/	

※ 작성방법

- ① 참가횟수 : 현재 참가횟수/종목별 참가제한 횟수 예) 당해연도 처음 참가하는 경우 ⇨ (표기) 1/4
- ② 최저학력제 : 학교장 확인여부(○,×) 기입
  - (대상/기준) 초4 ~ 고3 / 해당학년 과목평균(초 50%, 중 40%, 고 30%)적용
  - (성적적용) 1학기(전년도 2학기말 성적), 2학기(당해연도 1학기말 성적)
  - (초등학교) 지필고사 미실시고는 학교 자체기준 수립 후 적용
  - (최저학력 미도달) 학교장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를 이수한 경우 대회참가 승인 가능
  - (관련법령)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, 동법 시행규칙 제6조
- ③ 서명 : 학교장 자필 서명

위와 같이 전국대회 참가횟수 준수 및 최저학력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17년    월    일

000학교장

(③서명)